

# 삼척시국제화추진협의회 설치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63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'95. 4

제출자 : 삼척시장

## 1) 제안 이유

- 「경기도 남양주시 등 33개 도·농복합형태의 시설치에 관한 법률」에 의거 통합 이전 기구성된 협의회가 '94.12.31자로 자동 해체 됨으로써
- 신설 협의회 재구성시 통합시에 걸맞는 기능이 강화된 협의회를 정합으로써 세계화에 부응하는 지방자치단체 교류사업의 내실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에 일익을 도모하는데 있음.

## 2) 주요 골자

- 협의회 구성시 인원 보강으로 교류사업의 내실화 도모(제3조 제1항)
  - ◇ 협의회는 회장 및 부회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◇ 를  
⇒ .....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◇ 로 개정

## 3) 참고 사항

- 삼척시국제화추진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중 개정조례(안) 1부

삼척시국제화추진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

삼척시국제화추진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(구성) 제1항 중 15인 이내를 20인 이내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 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구성) ① ..... <u>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u>	제3조(구성) ① ..... <u>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u>

● 삼척시국제화추진협의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국제화의 균형있는 추진을 위한 민·관·산·학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원·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자치단체 국제교류 협력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 조정하기 위한 국제화추진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기능)** 국제화추진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.

1. 시의 국제교류계획 및 교류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
2. 각 분야별 국제화 추진 과제발굴에 관한 사항
3. 시의 국제교류협력사업 선정 및 추진 지원에 관한 사항
4. 지역주재 외국기관·단체등과의 우호증진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
5. 주민의 국제화 인식제고 방안 및 국제화 홍보에 관한 사항
6. 기타 국제화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

**제3조(구성)** ① 협의회는 회장 및 부회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및 소속 직원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며 회장은 협의회에서 호선하고, 부회장은 회장이 지명한다.

**제4조(회장의 직무)**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회무를 통괄한다.

②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회장 및 부회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**제5조(위원의 임기)**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임명된 소속 직원은 그 직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.

**제6조(위원의 해촉)** 시장은 위원이 사망, 질병,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.

**제7조(회의)** ① 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소집한다.

②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.

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**제8조(소위원회)** ① 협의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.

③ 소위원회의 구성과 임무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.

**제9조(간사)** ① 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둔다.

② 간사는 기획담당관이 되고, 회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 또는 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.

**제10조(협의·조정사항의 처리)** 시장은 협의회가 협의 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행정시책등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.

**제11조(공청회등 개최)** 협의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

공청회 및 세미나등을 개최할 수 있다.

제12조(수당등) 소속 직원이 아닌 협의회의 위원과 공청회, 세미나에 출석하여  
발언하는 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삼척시각종위원회설비변상조례  
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3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 
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.

#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